

의안번호	2214073
의 퇴 인	주호영 의원
회 답 일	2026. 4. 1.
추 계 번호	25B5975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이 무궁화의 날 기념행사 및 교육·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고, 무궁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홍보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8억 2,500만원(연평균 3억 6,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무궁화의 날 (제8조)	246	246	246	246	246	1,230	246
무궁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13조)	119	119	119	119	119	595	119
합계	365	365	365	365	365	1,825	365

주: 본 추계 결과는 산림청이 2023년까지 실시한 사업예산을 참고하여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시되는 사업의 내용, 규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육성 및 진흥과 무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국민의 애호정신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하여 심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2	안 제5조(무궁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산림청장은 무궁화를 진흥하고 무궁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도지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7조(실태조사)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무궁화의 보급·관리 현황 및 무궁화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 수립·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
5	안 제8조(무궁화의 날)	무궁화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나라꽃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서 무궁화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기념행사와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9조(건축물에 대한 무궁화의 식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물에 무궁화를 식재하려고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무궁화를 식재하려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재에 필요한 자문,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0조(무궁화 보급 확대 등)	산림청장은 무궁화 보급 확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생활권 주변 무궁화 식재 및 관리 사업 2. 무궁화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 3. 무궁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가치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홍보 사업 4. 그 밖에 무궁화 보급 확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8	안 제11조(무궁화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촉진)	산림청장은 무궁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1. 우수한 무궁화 품종의 보존,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연구 2. 무궁화 재배·관리 기술 향상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무궁화 진흥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가 무궁화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연구기관·단체, 무궁화산업 종사자 등에게 보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산림청장은 무궁화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보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9	안 제12조(무궁화 기반시설의 확충 등)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안정적인 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품종보존원, 종자공급시설, 양묘시설 등 무궁화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무궁화 품종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양묘시설(이하 “스마트양묘장”이라 한다)의 설치 등 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산림청장은 무궁화 관련 스마트양묘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10	안 제13조(무궁화에 대한 이해 증진)	산림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1	안 제14조(국제 교류 활성화)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국내·외 협력망 구축 및 운영 2. 해외 소재 무궁화 동산 등의 조성·관리 및 홍보 3. 무궁화 관련 국제행사 개최 4. 우수한 무궁화 품종 교류 및 종자 보전을 위한 연구 협력	재량규정
12	안 제15조(지원 센터의 지정 등)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무궁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무궁화 진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16조(민간 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무궁화의 연구·보급 또는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무궁화의 생산·육성 또는 유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그 밖에 무궁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재량규정
14	안 제17조(권한 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무궁화 보급·육성 및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5조(무궁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 미대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은 5년 주기로 무궁화진흥계획 수립·시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왔음 — 산림청에 따르면 추가재정소요 없이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가능
3	안 제6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내용</th><th>수행기간</th><th>예산</th></tr><tr><td>무궁화 중장기 정책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용역</td><td>'22.3.29.~9.30.</td><td>52</td></tr><tr><td>무궁화 진흥계획 중장기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td><td>'17.4.13.~9.15.</td><td>30</td></tr></table> 자료: 산림청	사업내용	수행기간	예산	무궁화 중장기 정책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용역	'22.3.29.~9.30.	52	무궁화 진흥계획 중장기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	'17.4.13.~9.15.	30
사업내용	수행기간	예산										
무궁화 중장기 정책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용역	'22.3.29.~9.30.	52										
무궁화 진흥계획 중장기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	'17.4.13.~9.15.	30										
4	안 제7조(실태조사)	-	- 미대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은 무궁화 보급·관리 현황 등에 대해 정기(5년)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음 - 산림청에 따르면 추가재정소요 없이 실태조사 실시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5</th><th>'26</th></tr><tr><td>산림보호국 기본경비 (7011-255)</td><td>o 무궁화 확산 정책사업 위탁 - 무궁화실태조사 등 무궁화 확산 등을 위해 실시하는 위탁사업 수행</td><td>36</td><td>54</td></tr></table> 자료: 산림청	사업명	사업내용	'25	'26	산림보호국 기본경비 (7011-255)	o 무궁화 확산 정책사업 위탁 - 무궁화실태조사 등 무궁화 확산 등을 위해 실시하는 위탁사업 수행	36	54	
사업명	사업내용	'25	'26									
산림보호국 기본경비 (7011-255)	o 무궁화 확산 정책사업 위탁 - 무궁화실태조사 등 무궁화 확산 등을 위해 실시하는 위탁사업 수행	36	54									
5	안 제8조(무궁화의 날)	○	유사사례 참고									
6	안 제9조(건축물에 대한 무궁화의 식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의 무궁화 식재에 필요한 자문,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7	안 제10조(무궁화 보급 확대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이 무궁화 보급 확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생활권 주변 무궁화 식재 및 관리 사업, 무궁화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무궁화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 참고로,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직접, 보조사업) 무궁화등 산 조성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5</th><th>'26</th></tr><tr><td>정원 운영 및 박람회 지원 (1945-302)</td><td>o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사업 - 생활권 주변 무궁화동산 조성관리로 친근한 무궁화 이미지 구축 - 예산: 1,760백만원(25년) * (직접) 조성 200백만원, 관리 60백만원 * (보조) 조성 1,500백만원 - 규모: 조성 16개소, 관리 6개소 * (조성) 개소별 1~2억원 내의 * (관리) 개소별 1천만원</td><td>1,760 (지방비 포함)</td><td>2,160 (지방비 포함)</td></tr></table>	사업명	사업내용	'25	'26	정원 운영 및 박람회 지원 (1945-302)	o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사업 - 생활권 주변 무궁화동산 조성관리로 친근한 무궁화 이미지 구축 - 예산: 1,760백만원(25년) * (직접) 조성 200백만원, 관리 60백만원 * (보조) 조성 1,500백만원 - 규모: 조성 16개소, 관리 6개소 * (조성) 개소별 1~2억원 내의 * (관리) 개소별 1천만원	1,760 (지방비 포함)	2,160 (지방비 포함)
사업명	사업내용	'25	'26								
정원 운영 및 박람회 지원 (1945-302)	o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사업 - 생활권 주변 무궁화동산 조성관리로 친근한 무궁화 이미지 구축 - 예산: 1,760백만원(25년) * (직접) 조성 200백만원, 관리 60백만원 * (보조) 조성 1,500백만원 - 규모: 조성 16개소, 관리 6개소 * (조성) 개소별 1~2억원 내의 * (관리) 개소별 1천만원	1,760 (지방비 포함)	2,160 (지방비 포함)								
			자료: 산림청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2조(무궁화 기반시설의 확충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이 무궁화 기반시설을 확보·관리하고, 스마트양묘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무궁화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움
10	안 제13조(무궁화에 대한 이해 증진)	○	유사사례 참고
11	안 제14조(국제교류 활성화)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무궁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12	안 제15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이 효율적인 무궁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법인을 무궁화 진흥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규모, 지원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13	안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궁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지원 대상의 선정 방법,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4	안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대상 기관, 업무 위탁 범위 및 대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무궁화의 날(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기념행사와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해당 비용은 산림청이 2023년까지 실시한 무궁화 전국 및 지역축제 사업 예산을 참고하여 2억 4,600만원으로 가정
 - 산림청은 무궁화 진흥을 위해 전 국민이 무궁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무궁화 전국 및 지역축제사업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축제 개최 (2023년까지 실시, 2024년 이후 미편성)

[표 2] 무궁화 전국 및 지역축제 사업 예산 현황: 2020~20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무궁화 전국 및 지역축제	246	246	246	246

자료: 산림청

- 추계결과 산림청장이 무궁화의 날 기념행사 및 교육·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2억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무궁화의 날 기념행사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무궁화의 날 기념행사 및 교육·홍보 활동	246	246	246	246	246	1,230	246

주: 본 추계 결과는 산림청이 2023년까지 실시한 무궁화 전국 및 지역축제 사업을 참고하여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시되는 사업의 내용, 규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무궁화에 대한 이해 증진(안 제13조)

- 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이 무궁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해당 비용은 산림청이 2023년까지 실시한 무궁화 진흥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 무궁화진흥사업 예산을 참고하여 1억 1,900만원으로 가정
 - 2023년 무궁화 진흥사업: 문화작품공모전(59백만원), 무궁화 바로알기 교육(50백만원), 분화나눔(10백만원) 등(2024년 이후 미편성)

[표 2] 무궁화 진흥사업 예산 현황: 2020~20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무궁화 진흥사업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	119	119	119	119

자료: 산림청

- 추계결과 산림청장이 무궁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5억 9,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무궁화에 대한 이해 증진 조치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무궁화에 대한 이해 증진	119	119	119	119	119	595	119

주: 본 추계 결과는 산림청이 2023년까지 실시한 무궁화 진흥사업 중 일부 사업을 참고하여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시되는 사업의 내용, 규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